

2017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

목 차

머리말	1
필수사항	2
용어설명	3
2017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9
2017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내용설명 포함)	19
1.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0
1.1 사회적 역할	20
1.2 조직과 운영	21
1.3 전략과 계획	23
2. 교육과정	24
2.1 역량	24
2.2 교육과정 구성	25
2.3 교육과정 운영	27
2.4 임상 교육	28
2.5 졸업역량 평가	30
2.6 학생연구	31
2.7 전문석사학위	32
3. 학생	33
3.1 학생선발	33
3.2 학생활동	36
3.3 학생재정관리와 복지	38
4. 교수	40
4.1 전임교수	40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41

4.3 교수 개발 및 지원	42
5. 자원	43
5.1 교육시설 및 자원	43
5.2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45
6. 임상교육 환경	46
6.1 진료시설의 확보 및 관리	46
6.2 임상교육기구의 조직구성	47
6.3 환자중심의 진료	49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51

머 리 말

본 인증기준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고 있는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지속적 질관리와 질향상을 이룸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질보장을 위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2008년 발표한 이후 치의학교육의 질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오고 있다. 본 인증기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전문분야로서 치의학분야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자문과 이해당사자들간의 성과의 공유를 통해 치의학분야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치의학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 인증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기되었던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기준과 내용 설명을 정리하여 기준 적용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에 맞추고, 우리사회가 새로운 치과의사에 대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 될 수 있게 체계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본 인증기준은 치과의사 양성에 책임을 가진 인증대상 교육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치의학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역량을 적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치과의료 질적 수준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 국민들과 각종 치과의료기관 등에 대해 각 치의학교육프로그램의 교육능력과 교육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본 인증기준을 활용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통해 치의학교육프로그램은 사회가 원하는 우수한 치과 의료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수사항

1. 2017년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즉,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치과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2. 인증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중
 - (1) 특별히 자료 제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한다(예: 2018년 평가대학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2) 치의예과와 치의학과를 구분하여 6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치의예과의 교육과정 중 치의학기본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3) 모든 기준은 치과대학(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기준이다.
 - (4) 참고자료의 [부록]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비치]는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아울러 [현장확인] 자료는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이다.
 - (5)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한 모든 기구의 활동은 평가와 피드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

용 어 설 명

국가적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개발한 역량으로서 치의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능력을 행동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결과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한 목록이다.

교육목적: 교육철학에서 제시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치과대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다. 교육철학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목표의 상위개념으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쓸 필요가 있다. 국내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수준의 진술을 ‘교육목표’로 명명한 경우가 있다. 교육목표는 학생수준의 세부적인 성취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목적 기술의 예시〉

- 치과대학은 치아와 구강악안면부위 및 그와 관련된 신체에 관한 학문의 교육을 통하여 치과의사와 치의학자를 양성하고, 이의 기초 및 임상적 연구를 통해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치아와 구강악안면부위의 질환 및 기형, 발육장애 등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의료활동으로 인류의 구강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성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활동방향을 밝힌 것이다.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의 하위차원으로 현실적, 기술적 입장으로 목적 달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습경험(교육내용)을 통한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치의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서 기대되는 능력을 행동적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술한 목록이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가 교육성과를 의미한다.

〈교육성과 기술의 예시〉

- 전신질환의 증상을 인식할 수 있고, 전신질환 및 해당질환의 관리방법이 치과진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 모든 임상절차에서 보편적인 감염관리 규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전담 조직 교육실, 교육지원실, 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가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행정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조직에는 운영 규정과 임기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책임자,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행정조직이나 위원회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철학: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선언이다.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이며, 소속된 종합대학의 이념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내용과 함께 교육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정의된다.

리더십 프로그램: 리더십은 전문의료인을 양성하는 치의학교육프로그램이 그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하며 특히 교육과정의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훈련과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별도로 선발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과정은 외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 목표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내부의 논의를 통해 설정 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행위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제시된 명제(학습자료)에서 참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제공된 증거와 추론을 검사하여 사실들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을 하는 사고의과정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의 배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추론은 엄정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근거기반의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판단과 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창의적 사고).

사회적 기여: 사회적 기여는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캠페인의 수준을 넘어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여기에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취목표(횟수나 분량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치의학교육프로그램 내부의 논의와 대상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례제시>

- 치과대학은 지역사회구강보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가 위치하는 ○○시 ○○구를 목표지역으로 해서 지역치과의사회와 ○○구청, 자원봉사자 모임인 ○○회와 함께 12세 이하 아동의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생과 교수가 팀을 구성하고 자료의 수집과 면담, 필요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일차목표를 ○○, 기간을 ○년으로 설정하였다.

역량: 치과의사로서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을 의미한다.

- 역량은 교육의 결과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 역량은 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역량은 총체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과 같이 상대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수행으로 드러나기 쉬운 측면뿐 아니라 동기와 태도와 같이 인간의 심층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능력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평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일차진료 수준의 의료가 가능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초 및 임상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일차진료: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으로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보건의료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first contact care)이며,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를 의미한다.

의료인문학: 바람직한 치과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개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 환자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의료 경험이나 지식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인문학은 의료윤리와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통합성(integrity) 과 반성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포함된다.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교육 형태에 대한 철학으로 어떤 주어진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전문가 양성의 교육목표에서 주어진 최종학습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의 (전) 과정을 본인 학습설계에 따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에서는 학습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세가 강조된다. 전통적 교육철학에서와 달리 자기주도학습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상호 대등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한다. 학습자가 명령이나 강제에 의해 학습을 강요받는 일련의 행위보다는 학습자가 교수자를 이용(조력)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며 교수자는 학습자에 대해 도움을 주는 ‘지원자(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체계: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전임교수: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임용보고 된 자)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된 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 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자

진료보조인력: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치과대학: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6년제의 학사학위 수여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인가를 받은 치과의사 양성교육기관이 대상이며,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4년제의 (전문)석사학위 수여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인가를 받은 치과의사 양성교육기관이 대상이며, 해외 교육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최소임상역량: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일차진료 수준의 의료가 가능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상역량이다. 학교별 설정된 최소임상역량을 기술한다.

치의학도서관: 인체 중 구강악안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전자자료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치과대학(원) 학생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시설이다. 의학도서관으로 설치하는 경우 치의학 관련자료(기초 생의학 자료 포함)와 해당 자료 구입/유지 예산의 비율이 적어도 이용하는 학생 중 치과대학(원)생의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학생자치활동: 학생이 집단으로 자주적인 학교생활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외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 각종 동아리 활동, 자율적인 학술교류 모임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학생진료의 질관리: 학생 진료도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진료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진료 실패(수복물 파절이나 탈락 등)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환자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학생 진료 수준을 파악하는 일을 말한다.

환자중심진료: 환자를 개별 시술 행위를 시행해 보는 실습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 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진료를 말한다.

부록: 인증기준의 충족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치과대학(원)이 자체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부록은 치과대학(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문서나 자료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치과대학(원)은 영역별로 부록을 묶어 자체평가보고서와는 별도로 제본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과 비치자료 번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부록은 A를 부여하며 영역별로 A1-1, A1-2, ..., A2-1, ...로 표시한다.

비치: 인증기준의 충족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치과대학(원)이 방문평가단에게 제시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비치자료는 치과대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자료 중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고 질의응답이 필요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치과대학(원)은 방문평가단의 평가장소에 비치자료를 목록과 함께 제공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부록과 비치자료 번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치는 B를 부여하며 영역별로 B1-1, B1-2, ..., B2-1, ...로 표시한다.

현장확인: 인증기준의 충족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방문평가단이 치과대학(원)에서 직접 실사, 관찰, 면담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치과대학(원)은 방문평가단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담당자나 관계자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미리 섭외를 해 놓아야 한다.

영역별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부문	세부기준	
		대학	대학원
1. 치의학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	1.1. 사회적 역할	2	2
	1.2. 조직과 운영	5	5
	1.3. 전략과 계획	3	3
	소계	10	10
2. 교육과정	2.1. 역량	3	3
	2.2. 교육과정 구성	5	5
	2.3. 교육과정 운영	3	3
	2.4. 임상교육	5	5
	2.5. 졸업역량 평가	4	4
	2.6. 학생연구	2	2
	2.7. 전문석사학위	0	3
소계	22	25	
3. 학생	3.1. 학생선발	4	4
	3.2. 학생 활동	6	6
	3.3. 학생재정관리와 복지	5	5
	소계	15	15
4. 교수	4.1. 전임교수	1	1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3	3
	4.3. 교수 개발 및 지원	3	3
	소계	7	7
5. 자원	5.1. 교육시설 및 자원	4	4
	5.2.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3	3
	소계	7	7
6. 임상교육 환경	6.1. 진료시설의 확보 및 관리	2	2
	6.2. 임상교육기구의 조직구성	5	5
	6.3. 환자중심의 진료	3	3
	소계	10	10
합계		71	74

**2017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1.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1 사회적 역할

1.1.1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운영

1.2.1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위한 정책구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1.2.2 보직자(학장, 부학장 등)의 자격,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 임기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2.3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2.4 연간 예산의 편성 절차, 결산 및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결산평가결과의 활용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1.2.5 모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치과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과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3.3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과정

2.1 역량

2.1.1 졸업생의 역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1.2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2.1.3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구성

2.2.1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2.2.2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2.3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2.4 학생들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2.5 의료인문학을 교육하여야 한다.

2.3 교육과정 운영

2.3.1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2.3.2 교육과정의 범위, 기간, 내용, 방법,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있어야 한다.

2.3.3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2.4 임상교육

2.4.1 학생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4.2. 학생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임상교육을 하여야 한다.

2.4.3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임상실습평가기준 및 체계가 있어야 한다.

2.4.4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2.4.5 임상실습 평가기준 및 체계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5 졸업역량 평가

2.5.1 졸업생이 도달해야 할 역량의 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2.5.2 졸업생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2.5.3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

2.5.4 졸업생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

2.6 학생연구

2.6.1 학생들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2.6.2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전문석사학위

2.7.1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2.7.2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2.7.3 전문석사학위 수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학생

3.1 학생선발(대학)

3.1.1 학생 선발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3.1.2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3.1.3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4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되먹임(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3.1 학생선발(대학원)

3.1.1 학생 선발 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3.1.2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3.1.3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3.1.4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되먹임(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3.2 학생활동

3.2.1 학생들을 위한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2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2.3 학생들의 자치기구 운영 및 사회봉사 등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3.2.4 학교의 운영체계(governance)에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

3.2.5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2.6 졸업생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재정과 복지

3.3.1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3.3.2 다양한 장학 지원제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3.3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한다.

3.3.4 학생 개인의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3.3.5 학생들의 학내 및 병원 생활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을 포함한 치의학교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4.2.1 교수들의 교육 활동이 적절하여야 한다.

4.2.2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4.2.3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3 교수 개발 및 지원

4.3.1 교수들에게 치의학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2 교수들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4.3.3 교수 업적평가가 교육,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적절히 시행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5. 자원

5.1 교육시설 및 자원

5.1.1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5.1.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3 치의학도서관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5.1.4 구성원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2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5.2.1 전임교원 개인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2.2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2.3 실험실과 설비의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6. 임상교육 환경

6.1 진료시설의 확보 및 관리

6.1.1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1.2 학생 진료시설의 전체 규모가 학생수와 정해진 임상실습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6.2 임상교육기구의 조직구성

6.2.1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2.2 학생진료시설을 전담하는 진료보조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6.2.3 학생진료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포함), 전임의, 전공의 등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

6.2.4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6.2.5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6.3 환자중심의 진료

6.3.1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진료시설 진료규정이 있어야 한다.

6.3.2 학생진료시설에서 학생진료의 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3.3 임상교육을 성취하고자 학생교육의 임상진료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어야 한다.

2017 치과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 내용설명 포함 -

1.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1 사회적 역할

1.1.1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이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활동 설정방향 지침이 되고 평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지 기술한다.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이 교육과정 관련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교육과정의 설명과 내용구성에서 반영된 내용과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교육관련 모든 문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철학과 교육목적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방안을 이해하여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	--

1.1.2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사회적 기여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 차원 또는 구성원 개인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	--

[참고자료]

- 비 치: B1-1.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약서
- B1-2. 사회발전 기여에 관한 운영규정

현장확인: 대학구성원 면담(교육목적을 치과의사와 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1.2 조직과 운영

1.2.1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위한 정책구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공개된 의사결정 구조 및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각종 회의체 및 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그 운영기록과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

1.2.2 보직자(학장, 부학장 등)의 자격,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 임기 등을 명문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보직자(학장, 부학장 등)의 자격, 권한과 책임, 선임절차, 임기 등을 명문화한 규정과 그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

1.2.3 교육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일부 구성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심화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며 심화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참여의 기회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치과대학이 주관하지 않는 외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	---

1.2.4 연간 예산의 편성 절차, 결산 및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결산평가결과의 활용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부서 또는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조직의 의견수렴 체계 뿐 아니라 전체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그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결산을 구성원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의 범위는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나 본교의 규정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

1.2.5 모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치과대학(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본교의 규정에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의견이 반영되는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성과를 같이 기술한다.
------	---

[참고자료]

- 비 치: B1-3. 책임자 선임, 업무 및 역할, 부서운영 규정
- B1-4. 모대학의 치과대학(원) 관련 의사결정 규정
- B1-5. 운영 및 임상교육 등의 관련 회의록
- B1-6. 학회, 세미나 개최 자료
- B1-7. 예-결산 자료

1.3 전략과 계획

1.3.1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p>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간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서에 그 계획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모든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정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p> <p>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본부 혹은 재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구성원 또는 공중에 공개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	---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과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p>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p>
------	--

1.3.3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설명	<p>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설 기구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에 따른 성과 및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	---

[참고자료]

- 비 치: B1-8. 중·장기 발전계획서
 B1-9. 발전계획 관련 규정
 B1-10.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회의록
 B1-11. 발전계획 평가보고서

2. 교육과정

2.1 역량

2.1.1 졸업생의 역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졸업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의 범위와 수준을 명시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역량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에는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세부역량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	---

2.1.2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각각의 역량을 성취하기 위한 교과목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연결 관계가 설명된 문서가 있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이 역량의 성취와 갖는 연결 관계는 개별 수업계획서에도 기술하여야 한다.
------	--

2.1.3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매년 1회 이상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2-1. 역량기준

비 치: B2-1. 역량기준 평가기준집

B2-2. 역량기준 평가기준 수립을 위한 회의록

B2-3. 교육기구 운영규정, 현황 및 회의록

2.2 교육과정 구성

2.2.1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과정 개선 및 적용 과정에 구성원의 협의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데에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전공 교실별 또는 과정별 교과목 담당 교수 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2.2.2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자기주도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과시간에서 강의만이 아닌 학습자의 학습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자율적 목표 설정과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에서 교육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자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관련자가 될 수도 있다.</p> <p>교육기관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시간을 정해진 교과과정 내 교육시간의 일정부분 이상을 학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강의의 비중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습자중심의 강좌운영을 포함하도록 한다.</p> <p>근거기반치의학은 자기주도학습과 비판적 사고의 기본이 되므로 근거기반 치의학 훈련은 반드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교육시간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근거기반 치의학은 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성과는 학생들의 과제, 발표물 등에서 드러나므로 모든 교과에서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료(보고서, 발표자료, 녹화기록, 및 근거기반 치의학에 따른 평가기준)를 제시한다.</p>
------	--

2.2.3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치과의사로서 우리사회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배출하여야 한다.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를 얻기 위해 전통적인 강의 및 수기중심의 실습 외에도 그 성과가 증명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강의와 실습중심의 교육이 기본적인 치과의사의 기능적 훈련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의사결정과 기본적 기술의 환자에 대한 적용에는 새로운 교육연구를 통해 증명된 보다 향상된 교육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역진행 수업, 소그룹 학습, 봉사학습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 될 수 있으며, PBL, TBL과 같은 학습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의 강의실 수업이나 실습에도 학습자 특성에 대한 배려와 새로운 학습이론이 적용되는 강좌운영이 가능하다.</p> <p>전통적인 방식 강의실습외의 소그룹토론, 현장학습 등의 시간과 구성을 기술하고, 강의와 실습에 새롭게 적용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운영의 내용을 기술하고 그</p>
------	---

	교안 또는 학습안내자료(강의계획서 및 강의록) 성과물을 제시한다.
--	--------------------------------------

2.2.4 학생들의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봉사활동 기관(교내외) 및 수행을 위한 요건(봉사시간 인정 방식)을 명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점을 부여하거나 진급요건 또는 졸업요건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	--

2.2.5 의료인문학을 교육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인문학을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의료인문학에는 의료윤리와 의사소통을 포함하며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통합성(integrity)과 반성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	---

[참고자료]

부 록: A2-2. 교육과정안내서 또는 교육계획서

A2-3.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별 배분의 종합편성표

비 치: B2-4. 교육과정의 구성과 배분을 위한 회의록(전체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B2-5. 학생교육 자료집 (강의록)

B2-6. 통합교과 매뉴얼

2.3 교육과정 운영

2.3.1 교육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전담 조직에는 교육실행과 교육개선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	--

2.3.2 교육과정의 범위, 기간, 내용, 방법,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부 교과목 단위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개별 학생 및 학습 성과 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의 수준이나 범위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효과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및 객관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

2.3.3 교육과정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내용설명	평가결과는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어 구성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일정기간 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2-4. 교육과정 평가 종합분석결과 보고서
A2-5.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지(양식)

비 치: B2-7.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받은 응답 설문지
B2-8. 교육과정 평가 관련 회의록

2.4 임상교육

2.4.1 학생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전에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이 임상 교육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즉 환자의 권리와 전문가로서 환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선택,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 및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충분히 학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상교육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보충 교육을 해야 한다.
------	--

2.4.2. 학생이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임상교육을 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정의한 역량의 범주에 적절한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한지를 판정해주는 절차가 모든 역량의 항목에 대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	--

2.4.3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임상실습평가기준 및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들이 실제 환자의 진료 과정에 참여하면서 진료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적절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서 정확한 술식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응대 및 진료 전 과정에서 전문가적 태도를 수행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은 학생 및 교수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2.4.4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술기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되먹임(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의 진료를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부족한 내용에 대해 되먹임(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되먹임(피드백)은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임상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벗어나 시행한다. 되먹임(피드백)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며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	---

2.4.5 임상실습 평가기준 및 체계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임상 실습 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 방법 개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환자 진료 및 임상관찰 실습을 개선해야 한다.
------	---

[참고자료]

비 치: B2-9. 임상교육 설계 회의록

B2-10. 평가지 되먹임 예시자료(평가지에 되먹임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현장확인: 학생면담

2.5 졸업역량 평가

2.5.1 졸업생이 도달해야 할 역량의 평가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모든 역량을 졸업 전에 미리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2.5.2 졸업생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역량의 평가결과는 단순한 성적의 기록이 아닌 적합성의 판정과 그 사유, 향후 개선의 방법이 개인별로 기록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체 학생의 성적과 경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

2.5.3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평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역량평가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정한 역량기준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하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단, 2) 수복치료, 3) 외과적 치료(치주치료 포함), 4) 예방처치
------	--

2.5.4 졸업생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역량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2-6. 역량평가지침서(학생배포용, 최소역량수준포함)

A2-7. 역량평가 일정 및 시행자료

비 치: B2-11. 역량평가 설계 회의록

B2-12. 역량평가 기준을 포함하는 역량평가 지침서(평가자용)

B2-13. 역량평가 결과보고서

B2-14. 역량평가 후 학생의 재교육 관련 자료

2.6 학생연구

2.6.1 학생들이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향후 연구계획의 수립과 연구수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	--

2.6.2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하는 행·재정적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체학생이 직접 연구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연구 참여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과 학생들이 참여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2.7 전문석사학위 (치의학전문대학원 인증기준)

2.7.1 전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2.7.2 전문석사학위 졸업생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2.7.3 전문석사학위 수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부 록: A2-8. 전문석사학위 수여 절차 규정

A2-9. 전문석사학위 수여 명단 및 최종성과 목록

비 치: B2-15. 전문석사학위 수여 대상자의 최종성과물

3. 학생

3.1 학생선발(대학)

3.1.1 학생 선발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 방법, 과정에서 교육이념 및 비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한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선발과정에서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도 바람직한 치과의사로서 양성할 대상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 의무이다.
------	---

3.1.2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지원자들의 다양한 배경(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을 고려한 선발 평가 기준이 있는지와 이를 적용한 선발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	--

3.1.3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 방법, 절차(지원서 접수, 서류평가, 면접 등의 심사과정 및 합격 통보, 후보자 선발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생 선발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	---

3.1.4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되먹임(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을 위한 정책(특성화, 비전 및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모집 유형, 선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위원회 및 교수회의 보고 등에 관한 실적을 기술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3-1. 입학/지원 안내서(배포용) 및 입시설명회 자료

A3-2. 학생선발 일정 및 시행자료

- 비 치: B3-1. 학생선발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자료/회의록
B3-2. 학생선발과 선발제도의 개선 관련 회의록
B3-3. 학생선발 결과와 교육성취의 연계성 분석 보고서

현장확인: 학생면담

3.1 학생선발(치의학전문대학원)

3.1.1 학생 선발 기준을 수립한 배경, 과정, 선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 방법, 과정에서 교육이념 및 비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한다.
------	---

3.1.2 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지원자들의 다양한 배경(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을 고려한 선발 평가 기준이 있는지와 이를 적용한 선발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	--

3.1.3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 방법, 절차(지원서 접수, 서류평가, 면접 등의 심사과정 및 합격 통보, 후보자 선발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생 선발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	---

3.1.4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선발을 위한 정책(특성화, 비전 및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모집 유형, 선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위원회 및 교수회의 보고 등에 관한 실적을 기술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3-1. 입학/지원 안내서(배포용) 및 입시설명회 자료
A3-2. 학생선발 일정 및 시행자료

비 치: B3-1. 학생선발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자료/회의록
B3-2. 학생선발과 선발제도의 개선 관련 회의록
B3-3. 학생선발 결과와 교육성취의 연계성 분석 보고서

현장확인: 학생면담

3.2 학생활동

3.2.1 학생들을 위한 지도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지도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학습,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강 또는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3.2.2 학생들을 위한 전문상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습, 학교생활에 미진하거나 부적응인 학생들(예: 장기 결석자, 유급 대상자 등)과 폭력(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및 폭언 등 포함)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지되어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

3.2.3 학생들의 자치기구 운영 및 사회봉사 등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기구를 인정하고 활발한 활동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장차 치과의사로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천하기 위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

3.2.4 학교의 운영체계(governance)에 학생이 참여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학생 자치 대표(단)는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

3.2.5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임상치의학 분야 이외에 기초치의학자 등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 정책(장학금, 생활비, 학회 참여 지원 등)이 내규 또는 시행세칙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

3.2.6 졸업생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취업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최근 2년간 응시자들의 치과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과 응시자들의 이전 학업성취도 또는 졸업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합격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

[참고자료]

- 부 록: A3-3. 학생지도 현황표(지도교수제도, 동아리현황, 학생회현황)
 A3-4. 학생회 운영규정 및 활동보고서
 A3-5.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안내자료

- 비 치: B3-4. 학생상담 운영현황 자료 및 회의록
 B3-5. 학생상담 및 진로 지도 관련 실적자료 및 회의록
 B3-6. 학생 취업 및 진로현황 분석 보고서(면허시험 포함)

현장확인: 학생면담

3.3 학생재정과 복지

3.3.1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신입생들의 입학 시 졸업까지의 대략적인 학비, 주거비용, 교재비, 개인 실습 기구 및 재료비 등에 대해서 자료집이나 웹문서 등을 통하여 입학 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

3.3.2 다양한 장학 지원제도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내외 장학금 유치 현황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 지급 기준 및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어야 한다.
------	---

3.3.3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들의 복지시설(기숙사, 체육 시설, 휴게실, 쉼터, 식당, 매점, 동아리실, 상담실 등)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	---

3.3.4 학생 개인의 건강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장차 의료인으로서의 학생 개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는 입학 시, 임상실습 전, 임상실습 과정 등 주요 단계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상담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야 한다.
------	---

3.3.5 학생들의 학내 및 병원 생활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내 및 병원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과 문제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체계(의료 지원 등)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참고자료]

- 부 록: A3-6. 학생 재정, 복지관련 안내서(배포용)
- A3-7. 학생 교육비 지원 및 복지시설 관련 규정 및 자료
- A3-8. 학생 복지 관련 조사보고서
- A3-9.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지침 및 자료
- A3-10. 학생건강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 비 치: B3-7. 학생재정지원방안 관련 회의자료/회의록
- B3-8. 학생복지/건강/안전관리 관련 회의록

현장확인: 학생면담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 의료인문학을 포함하는 치의학교육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정한 모든 교육단위 별로 적정인원의 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p> <p>전임교수의 적정인원 수는 각 교과목단위를 주어진 단위 교육기간 동안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의 시행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피드백(피드백)을 시행하는데 적절한 인원이어야 한다. 각 교육단위 별 전임교수는 각 교육단위의 교육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제기하는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거나 자문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 <p>교육단위는 임상 및 기초치의학과, 의료인문학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적절한 능력을 갖춘 교육학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p> <p>** 전임교수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원만 인정함.</p>
------	---

[참고자료]

부 록: A4-1. 교수명단 (전공 등 자료포함, 공개용)

A4-2. 전임교수 출신학교별, 남녀별 현황

비 치: B4-1. 교원인사(임용, 승진 등) 현황 자료

B4-2. 교원수급관련 회의자료/회의록

4.2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4.2.1 교수들의 교육 활동이 적절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수들의 수업 참여 시수를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수업시수는 강의, PBL facilitation, 기초실습, 임상전단계 실습, 임상실습 등으로 구분한다. 교수들이 교육활동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4.2.2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수들의 저서(역서 포함), 논문, 특허 등을 포함한다. 교수들의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과 내부연구비 수주 실적을 포함한다.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
------	--

4.2.3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전담조직(연구소, 지원실, 센터 등)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전담 인력(행정직, 조교, 연구원 등)이 있어야 한다.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4-3. 전임·비전임 교수 강의 및 실습 담당 실적

A4-4. 교내 특화 연구사업 안내서(배포용)

A4-5. 연구지원체계 안내서(배포용)

비 치: B4-3. 최근 2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

B4-4. 교내 특화 연구사업 성과 보고서

B4-5. 연구지원체계 관련 규정 및 자료

B4-6. 연구지원체계 관련 회의록

4.3 교수 개발 및 지원

4.3.1 교수들에게 치의학교육관련 연수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전체 교수에게 치의학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p> <p>치의학교육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주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p> <p>모든 교수가 최근 2년 동안 연간 3시간 이상 치의학교육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p> <p>신임교원은 발령 후 1년 이내에 치의학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학회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최소 15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p>
------	---

4.3.2 교수들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교수들의 국내외 연수(연구년 포함)와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p> <p>지원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 실적(최근 2년 간)이 있어야 한다.</p>
------	---

4.3.3 교수업적평가가 교육,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적절히 시행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p>교육 및 연구 성과를 포함한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직급별, 기능별(기초/임상/의료인문학)로 적정하고 명확한 평가 내용 및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최근 2년 간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p> <p>승진심사 및 정년보장 기준에 교수의 교육관련 성과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
------	--

[참고자료]

부 록: A4-6. 교육관련 연수회/학회 안내문, 자료집

A4-7. 교수개인별 교육관련 국내외 연수 등 참여 현황

A4-8. 교수업적 평가기준

A4-9. 교육·연구 보조인력 현황

비 치: B4-7. 교수연수 지원 규정

B4-8. 교수연수 지원 실적

B4-9. 교수업적평가 기준수립 관련 회의록

B4-10. 교수업적평가 관련 회의록, 평가자료

5. 자원

5.1 교육시설 및 자원

5.1.1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공간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수와 교육 방법에 맞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소규모 학습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공간의 규모, 운영 및 관리 현황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교육공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및 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공간의 안전관리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

5.1.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수와 교육 방법에 맞는 기본시설 및 장비(실험 실습 장비, 전산 장비, 안전관리 장비 등)를 갖추어야 한다. 기본 장비의 규모, 운영 및 관리 현황이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본 장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및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	---

5.1.3 치의학도서관을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도서관이 접근성, 전용 공간, 행정의 독립여부를 포함하여 치의학교육을 지원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의생명(Biomedical) 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치의학분야의 공식적인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정된다. 치의학도서관의 정보관리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치의학 정보자료(도서, 학술지, 시청각자료, 전산자료 등 포함)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치의학 자료 구입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

5.1.4 구성원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학사 운영 정보 접근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행정전산화, 교육과정 전산화 등을 포함)을 구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및 예산을 갖추어야 한다.
------	--

[참고자료]

- 부 록: A5-1. 교내시설 및 설비현황 총괄표
A5-2.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안내서
A5-3. 문헌정보시설 이용 안내서

- 비 치: B5-1. 교내 시설 및 설비현황 자료
B5-2. 교육시설 운영현황(사용 및 유지보수내역 포함)
B5-3. 교육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현황
B5-4. 문헌정보시설 운영관리 현황(보유자료 등 포함)

5.2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시설 및 자원

5.2.1 전임교원 개인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전임교원의 교수개발 및 교수설계, 교육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적절한 개인 연구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치의학교육 프로그램내의 기준이나 운영지침, 관리 현황을 참고로 제시할 수 있다.
------	--

5.2.2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역량은 학생의 연구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며, 창의적 인재로서의 치과의사의 역량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의 연구 참여에 앞서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이끌어 내는데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내의 연구기반시설은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와 학생의 연구 참여를 통한 창의성 교육에 필요하다. 실험실에는 적절한 연구 장비 및 설비가 갖추어지고 적절한 예산배정을 통한 운영인력 배정과 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5.2.3 실험실과 설비의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고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설비에는 안전을 위한 운영 규정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규에 맞는 안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5-4. 연구실 및 실험실 설비 기준 및 확보현황(개인별 자료 포함)

A5-5. 연구실 및 실험실 이용안내(공개용)

비 치: B5-5. 연구실 및 실험실 시설 및 설비현황

B5-6. 연구실 및 실험실 운영관련 회의록

B5-7. 연구실 및 실험실 관리대장

6. 임상교육 환경

6.1 진료시설의 확보 및 관리

6.1.1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진료시설은 학생의 환자기반 임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학생진료시설은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하는 진료공간이거나 해당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이 관리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계약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학생들의 위탁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포함한다. 학생임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규모(예, 병원), 운영체제, 교육병원 규정, 치과대학(원)과의 협약내용, 학생 임상교육시설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진료실의 운영사항이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감염관리 규정, 환자보호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

6.1.2 학생 진료시설의 전체 규모가 학생수와 정해진 임상실습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진료시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수가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진료시설의 규모는 학교가 정한 졸업역량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부 록: A6-1. 진료시설의 운영 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

6.2 임상교육기구의 조직구성

6.2.1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임상교육과 교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위원회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구의 운영규정, 인력배치, 활동상황 등이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

6.2.2 학생진료시설을 전담하는 진료보조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 임상교육과 교수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학생진료시설 전담은 정해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업무지침서 등에 해당 직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

6.2.3 학생진료시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포함), 전임의, 전공의 등 인력의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p>학생진료실 임상교육에 적절한 규모로 전임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p> <p>전공의 등이 학생지도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직무수행 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학생들이 교수자의 지도하에서 수행하는 진료행위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든 교수자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며, 담당 교수자의 역할과 참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	---

6.2.4 학생 임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p>학생진료실 임상교육 운영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학생진료시설 또는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한 규모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p> <p>예산의 편성은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에 적절한 형태이어야 한다.</p>
------	--

6.2.5 역량 달성에 필요한 환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환자 수급현황과 환자의 수급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

[참고자료]

- 비 치: B6-1. 임상교육 관련 회의록
- B6-2. 학생임상교육협의회 규정서
- B6-3. 학생임상교육협의회 회의록
- B6-4. 학생임상교육 예산 결산서

6.3 환자중심의 진료

6.3.1 환자중심 진료를 위한 학생진료시설 진료규정이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학생진료시설 진료규정에는 방사선과 감염에 대한 안전 교육을 포함하는 직업안전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환자 불만 개선 및 환자 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 중심 진료의 기본원칙을 학생 임상실습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포함한다.
------	---

6.3.2 학생진료시설에서 학생진료의 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설명	임상실습 시행 결과와 학생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임상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	---

6.3.3 임상교육을 성취하고자 학생교육의 임상진료실습이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어야 한다.

내용설명	일반인에게 학생진료에 대해 알리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학생진료에 대해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

[참고자료]

- 부 록: A6-2. 임상교육 안내서
- A6-3. 학생진료지침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 개발 필요성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규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치과대학의 변화를 자극하고,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데 있다.

- 역량의 의미

역량(competency)이란 치과의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직업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한다.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

2012.11.

영역별 세부 역량 수

영역	세부 역량 수
I.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3
II.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1
III.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5
IV.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3
V.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8
VI.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26
VII.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3
합계	49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의 역량 서문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규정한다. 치과의사가 구강 건강과 관련한 환자의 '요구'사항을 "진료"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치과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진료"행위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치료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교육과 자문, 다른 전문의료인에게로의 진료 의뢰, 치료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관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치료성과를 얻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침습적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량을 가진 치과의사는 면허를 부여 받아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신이 돌보게 되는 모든 환자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역량의 수준과 평가

치과의사의 역량을 정의하는데 있어 모든 세부역량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의 질적 수준과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한 역량은 등급을 가지지 않으며 각 역량의 행위는 정해진 수준의 행위를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없다'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역량은 스스로의 평가와 객관적 외부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전문의료인으로서 성공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치과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내린 결정과 진료 행위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확인하고 진료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세부 역량은 그와 연관된 지식, 기술 및 전문직업성이 그 요소로서 포함된다. 세부역량의 성공적인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수준'의 결정은 관련 교육기관과 면허기관 등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의 적용 범위

우리가 만든 역량은 일반 치과 개원의를 표준으로 하여 그들의 진료대상이 되는 모든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는 대한민국의 법과 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규정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역량의 활용

치과의사의 역량을 규정하는데 있어 치과의사의 모든 행위는 그들이 배운 생명과학, 행동과학 및 임상치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직업인의 윤리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역량의 규정이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지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역량의 승인

2011년 치과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증진 및 치과의료행위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승인받게 되었다. 이로써 치과의사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치과의사 양성과 선발에 있어 역량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역량

영역	세부역량
1.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능력	1.1. 치과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다.
	1.2. 학대, 방치 등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전문가적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
	1.3. 환자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사전동의와 같은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2.1.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
3.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3.1. 자신의 업무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의 진료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3.2. 전문인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사 관계를 정립하고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3. 환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환자중심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3.4. 진료팀과 전문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5. 진료팀 외에 접촉하는 업무 관련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4.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4.1. 치과진료와 관련된 기초치의학과 임상치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4.2. 의료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4.3. 진료행정, 재정 및 인력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환자의 증상	5.1. 환자의 주요호소증상을 파악하고 병력을 취득할 수 있다.

과 병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는 능력	5.2.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다.
	5.3.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구내·구외 진찰, 임상검사,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5.4. 치아 및 주위조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5. 악안면외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6. 구강내 연조직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7. 부정교합과 치아안면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5.8.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들의 행동·심리적 특성과 구강 내 성장변화에 부합되는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6.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
6.2.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시술을 할 수 있다.	
6.3. 치관내수복(in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6.4. 치관외수복(extra-coronal)을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6.5. 치수와 관련한 급성 통증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6.6. 기본적인 근관치료를 할 수 있다.	
6.7. 치석제거술·치근활택술을 시행할 수 있다.	
6.8. 만성치주염에 대한 치주소파술을 시행할 수 있다.	
6.9. 치주건강 유지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6.10. 단순 연조직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6.11. 국소마취를 할 수 있다.	
6.12. 약물을 이용한 행동조절을 할 수 있다.	
6.13. 단순 발치를 할 수 있다.	
6.14. 단순한 외과적 발치를 할 수 있다.	

	6.15.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약을 선택하고 처방할 수 있다.
	6.16. 단순한 절개와 배농을 할 수 있다.
	6.17. 생검을 위한 단순한 조직 절제를 할 수 있다.
	6.18. 보철을 위한 단순한 외과적 시술을 할 수 있다.
	6.19. 단순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술할 수 있다.
	6.20. 고정성가공의치와 국소의치 및 총의치의 기공작업을 지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6.21. 기본적인 심미치료를 할 수 있다.
	6.22. 교합을 조정할 수 있다.
	6.23. 악관절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6.24. 공간유지장치와 단순한 가철 교정장치를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다.
	6.25.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6.26. 감염관리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7. 치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7.1. 치과진료와 관련된 직업적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
	7.2.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다.
	7.3. 치과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구조술을 할 수 있다.